

의안번호	
의 퇴 인	황희 의원
회 답 일	2024.06.25.
추계번호	24C111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1)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 (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임

-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및 실습지
 -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현행법 제2조는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 공공·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이 추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23년 10월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교복합학교’등을 제시한 바 있음
 -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동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시형 캠퍼스²⁾는 개편형(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 학교) 및 신설형(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 학교, 매입형 학교, 공공시설 복합 학교)로 나뉨
 - 이 중 ‘주교복합학교’형은 소규모화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부지를 토지분할하여 학교용지에는 기설학교를 개축하고, 주거용지에는 공공아파트를 설치하는 형태(개편형)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학교용지에 도시형캠퍼스와 아파트를 분리된 건축물로 설치하는 형태(신설형)로 계획되어 있음³⁾
- 한편, 현행법 제3조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와 학교복합시설 설치로 인한 범죄 등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10조⁵⁾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될 경우 국가

2)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도시형캠퍼스’를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 및 교육제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로 정의

3)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입체복합화 형태의 주교복합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을 적시함(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교육청)

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한 향후 학교복합시설로 지정될 구체적 ‘공동주택’의 수나 사업규모, 예산내역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구체적 내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유형으로 설치될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예산규모 등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주교복합소규모학교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2024년 현재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에도 구체화된 사업은 ‘고덕강일3지구’ 한 곳임⁶⁾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6)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따르면 ‘고덕강일3지구’에 24학급 이하 규모의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를 2029.3.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